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34,259,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1,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 및 선정자는 2012. 11. 2. [redacted] [redacted]군 C건물 28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18,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9.부터 2016. 10. 18.까지 C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원고와 선정자의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보고, 2017. 1. 18.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와 선정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각 취득세 34,259,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1,5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 을 제2,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별장으로 사용이 변경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근거 법률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이고 원고와 선정자가 당초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잘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도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 제1조 내지 제154조'라고 적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된 구체적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선정자가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redacted] 건설 주식회사(이하 '상[redacted]건설'이라 한다)의 요구로 [redacted]건설이 시행한 C건물의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분양받은 것으로서, 원고와 선정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여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 또는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빈집으로 내버려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끔 인근 토지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도 하고 매도를 위해 집을 관리하고자 이 사건 주택에 들렀을 뿐 이 사건 주택에서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고된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텃밭 농사를 휴양·피서·놀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원고와 선정자로서는 이 사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언제부터 별장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dacted]건설이 시행한 C건물은 주거용 주택 31채, 일반음식점 1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주택 12채만이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미분양상태이다.

2) C건물은 [redacted]군 E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스위스풍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F로 이용되고 있으며(관광객 입장료 만 원), 경비실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단지로 입장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정원, 연못, 텃밭 등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G 골프클럽, H 골프클럽이 있다.

3) 이 사건 주택은 3층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합계가 154.3㎡이다. 원고와 선정자는 건축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업상 관계가 있던 [redacted]건설의 요구에 따라 [redacted]건설로부터 준공 전에 매각하거나 분양대금을 둘려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을 대금 6억 9,000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redacted]건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4) 원고와 선정자는 2012. 9. 25.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4. 9.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3. 4. 30. I의 요구에 따라 합의해지되었고,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5)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2015. 9. 16. 및 2015. 9. 21.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인터넷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6) 원고와 선정자 및 그 가족들은 I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C건물 부지 내에 [redacted]건설 소유의 토지 약 200평에서 텃밭을 일구어 2014년에는 고추, 오이, 호박, 피망 등을 재배하고 매실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총 27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15년에는 파, 콩, 무, 배추, 고구마 등을, 2016년에는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 원고 등은 수확한 농산물을 지인 등에게 나누어주거나 본인들이 소비하였다. 원고와 선정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원고 식구들이 빈집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5일씩 경작과 과수농사를 하며 실거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주택의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은 월 116kwh 내지 236kwh이었다. C건물 내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이미 분양된 주택 중 같은 기간 전력사용량이 월 100kwh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주택 내부에는 침대, 식탁,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고, 외부 창고에는 농기구, 종자 등이 보관되어 있다.

8) 원고는 2004. 4. 30. [redacted] [redacted]구 J건물 7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3. 27. 이를 1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redacted] [redacted]구 K건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9)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8. 19.부터 2016. 10. 18.까지 C건물이 별장용 건축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현장조사 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나 선정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다만 2016. 9. 4. 일요일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에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2016. 9. 8. 및 2016. 9. 22. 경비실 근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나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는 차량이 당일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 피고는 2016. 11. 7.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과세예고를 하였는데, 그 과세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통지서에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를 적용(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고와 선정자는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그 차액을 추징하고자 과세예고한다. 취득세 본세 27,718,18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543,6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4,190원 합계 33,636,000원, 농특세 본세 2,771,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4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조~제154조, 가산세 산출내역 '취득세 세율 20%, 세액 5,543,6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세율 0.03*120, 세액 997,85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와 선정자는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인 2016. 11. 29.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동안 주택의 매각과 농사일을 위해 거주하였지만, 별장 용도에 맞게 단 한 번의 파티나 휴식, 휴양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redacted]도지사는 2017. 1. 12.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나 취득 후 4년이 지난 현재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6, 18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추가한 세율을 적용하고,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에 관하여 별장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건축물을 처음부터 별장으로 취득한 경우와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임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 제1호,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와 선정자에게 취득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과세표준인 이 사건 주택, 적용되는 세율(중과세율) 및 그 중과세율을 규정한 법률 조항, 이 사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 본세와 가산세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던 점, ②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10%(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가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니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의 가산세율 20%(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바, 위와 같은 무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본세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원고와 선정자의 취득세 납부기한이 2016. 9.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본세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 이후 별장으로 사용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과세 근거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④ 원고와 선정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별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던 점, ⑤ 납세고지서에도 과세표준, 납세자, 본세 및 가산세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였음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을 120일로 적용하였음을 명시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 이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과세의 근거로 함을 알 수 있게 한 점, ⑥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 중 일부인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납세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위 조항을 전제로 할 때만 설명이 가능한 앞서 본 가산세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⑦ 반드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된 구체적 근거사유나 별장으로 사용하게 된 최초 일시를 특정해야 한다고 볼 법률상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거나 그 흠결이 보완되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처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의 용도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선정자는 임차인인 I의 퇴거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면서 인근의 텃밭에서 농사를 지내 왔다. 원고와 선정자가 가꾼 텃밭의 규모, 경작 내용, 위치, 농작물의 사용처, 경작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선정자의 텃밭 농사는 생계나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 활동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전력사용량, 배치 가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는 텃밭 농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휴식이나 준비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교외의 주택에 가끔씩 거주하면서 그곳 인근의 텃밭을 가꾸는 것은 전형적인 휴양에 해당한다. 만일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 휴양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신속히 처분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언제든지 이 사건 주택 및 텃밭에서 퇴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구 등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텃밭을 일군다거나 여러 해에 걸쳐 각종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선뜻 상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거래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 원고와 선정자의 사용 형태가 휴양, 피서 또는 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이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취득 경위나 원고와 선정자가 이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주택은 펜션 등 휴양시설이 많은 [redacted]군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나 원고와 선정자의 실제 거주지와의 거리, 주택 자체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휴양 등에 적법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④ 이 사건 주택은 분양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경비실에 상주하는 경비인력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는 단지 내에 있으며, 단지 내에 정원, 연못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그 시설이나 관리형태가 간소하지 않아 사치성 재산으로 보인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선정자에게 정당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정교형

판사 성기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선 정 자 목 록

1. A

2. B.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세액 ·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